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22 선고 2022가합1032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민정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명

변론 종결2024. 8. 27.

판결 선고2024. 10. 22.

주 문

1. C과

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21. 2. 23. 8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나. 피고 B 사이에 2021. 2. 23. 57,767,449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800,000,000원, 피고 B은 57,767,4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의 가항 및 주문 제2항 중 피고 주식회사 A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
2. 피고 B와 C 사이에 2021.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57,767,449원 한도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257,767,4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C이 2009. 5. 26.부터 2013. 6. 24.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5. 10. 7.부터 C의 아들인 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이고, 피고 B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나. 계좌 이체 내역

C은 2021. 2. 2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2,057,767,449원을 이체 받았다.

C은 같은 날 위 2,057,767,449원을 전액 수표(수표번호: F)로 출금하여, ① 피고 A의 계좌로 8억 원을 송금(이하 '제1송금'이라 한다)하고, ② 피고 B의 계좌로 1,257,767,449원을 송금(이하 '제2송금'이라 하고, 제1, 2송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C의 세금체납

C은 2024. 4. 1.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합계 1,462,570,88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는 1,735,493,480원이다.

1	종합부동산세	2017.6.	2017.6. 1.	2018. 3. 15.	6,505,830	3,371,740
2	종합부동산세	2018.6.	2018. 6. 1.	2018. 12. 15.	6,655,380	2,794,450
3	종합부동산세	2019.6.	2019.6.1.	2019. 12. 15.	13,471,290	4,233,490
4	양도소득세	2019.1.	2019. 12. 31.	2020. 12. 31.	498,300,450	655,264,960
5	증여세	2018.8.	2018. 8. 9.	2020. 12. 31.	109,097,750	143,463,420
6	증여세	2018.8.	2018. 8. 9.	2020. 12. 31.	148,687,090	195,523,400
7	양도소득세	2019.1.	2019. 10. 31.	2023. 8. 31.	679,853,090	730,842,020
합계	1,462,570,880	1,735,493,480				

2.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C의 채무초과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1)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제2송금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제2송금 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가산세 중 2021. 2. 23.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2024. 5. 24.자 준비서면 4쪽).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에는 본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고지세액에 2024. 4. 1.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 합계

1,735,493,480원이 된다.

나. 채무초과 상태

피고 A는, C이 제1송금 이후에도 1,257,767,449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933,872,020원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답변서 4쪽), C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100420호로 2018. 8. 16. 확정된 10,839,380,210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갑3-1, 변론 취지), 제1송금 당시에 C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C의 미납세액을 추가로 확인하여 피보전채권액을 1,735,493,480원으로 확장하였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에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채무초과 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아무런 법률관계나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진 2021. 2. 23.경 C의 적극재산은 2,057,767,449원이고, 소극재산은 12,301,875,04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는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될 뿐 아니라, C과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의 원인이 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 2) 피고 A C이 E로부터 입금받아 피고 A에게 송금한 8억 원은 C이 대표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갑11, 이하 'G'라 한다)의 자금으로, 피고 A는 위 8억 원을 G에 다시 반환하였다. 위와 같이 G의 자금 이동 과정에서 C과 피고 A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 위 8억 원은 C이나 피고 A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 A가 C으로부터 위 8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3) 피고 B C이 E로부터 받은 2,057,767,449원은 G의 자금이다. 피고 B은 C으로부터 받은 1,257,767,449원 중 10억 원을 G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 중 2억 5,000만 원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차용하여 사용한 후에 피고 A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C이 위 1,257,767,449원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송금 행위의 증여 해당 여부

1) 증여에 대한 증명책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룬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제1송금의 증여 여부 피고 A는 당초 제1송금에 관하여, 피고 A가 과거 C이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C에게 8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C이 I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K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C과의 투자계약이 해제되었고, 제1송금은 위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투자금 8억 원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답변서, 2023. 11. 13.자 준비서면, 2024. 4. 1.자 준비서면), C에 대한 투자금 8억 원은 C의 요청으로 L시설에게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2018. 7. 18.자 입금확인서(을가2)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 A는 2018. 7.경 자신이 채권자임을 전제로 그 명의로 L시설의 관련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을가3), 2021. 8.경 L시설과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 A가 2018. 7. 18. 대여한 8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합490호), L시설 등도 그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2022. 4. 8.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을나3, 현저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 A는 이미 별소를 제기하여 2018. 7. 18. L시설에 송금한 8억 원이 L시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이는 위 8억 원이 C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피고 A는 G의 세무조사 결과 C이 2021. 2. 23. E로부터 이체받은 2,057,767,449원이 실질적으로 G의 자금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피고 A가 C을 통하여 이체받은 8억 원은 2021. 5. 31. 다시 G에 이체되었으므로, 피고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C과 피고 A 사이에서 이루어진 제1송금의 경위는 G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성격의 것이 아니고, 나아가 입출금거래내역(을가8)만으로는 E가 C에게 이체한 돈이 당초부터 G의 자금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A가 8억 3,000만 원을 G에 송금한 시점이 제1송금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A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G에 전달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가사 최초 자금출처를 G로 보더라도 해당 자금이 C에게 이전된 이상 그때부터는 원칙적으로 C을 해당 자금의 보유자로 보아야 한다. C이 실질적인 거래내용 없이 단순히 계좌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C을 거래당사자에서 제외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C은 I 주식회사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 과정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등 사업주체로 활동해 왔다. C의 지위, 역할 및 G, E, 피고 A와의 관계에 비추어 C이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2021. 2. 23. E로부터 위 돈을 이체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증여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피고 측 영역에서 발생한 거래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피고 A는 8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체받았음에도 그 송금경위 자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반영하여 제1송금으로 피고 A에게 이체된 8억 원은 C이 피고 A에게 무상으로 수여하여 피고 A에게 중국적으로 귀속된 돈이라 판단한다.

3) 제2송금의 증여 여부 가) 주식회사 N에 교부한 수표 10억 원

피고 B은 2021. 2. 25. 제2송금으로 수령한 1,257,767,449원 중 10억 원을 수표(수표번호: O)로 발행받은 후(을나21-2), 이를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에 교부하였고, D은 2021. 2. 26. 위 수표 10억 원을 G에 입금하였다(을나16, 17-1, 21-3). 위와 같이 G로 입금된 10억 원 중 5억 원은 P에게 이체되고, 나머지 5억 원은 D이 다시 출금하여 법무사 Q에게 이체되었는데(을나19), 10억 원의 수표가 주식회사 N에게 전달된 이후에는 피고 B이 위 자금의 이체나 사용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D은 R의 아들이고, 당시 G의 대표이사는 R이었으며, 피고 B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종전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실질적인 거래관계 없이 C의 지시나 부탁으로 10억 원의 수표를 인출하여 주식회사 N에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과 피고 B 사이에 위 돈을 피고 B에게 중국적으로 귀속시키는 증여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H 계좌로 송금한 2억 원

피고 B은 제2송금으로 수령한 1,257,767,449원 중 2억 5,0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표(을나14, 21-1)에는 H에 2억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와 별도로 현금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5천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H에 송금한 2억 원은 C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C의 요청으로 피고 A에게 이를 반환한 돈일 뿐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 B은 당시 H의 대표이사였고, H에 송금된 돈은 위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기는 하였다(을나8 6-7쪽). 그러나 피고 B은 H의 계좌에서 2021. 3. 11.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사이에, 피고 A에게 224,090,000원을 이체하였다(을나10-5, 15). 피고 A는 C이 대표이사를 지냈었고, 위 거래 당시 C의 아들인 D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로, 피고 B이나 H은 종래 피고 A와 별다른 거래 관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C의 지시 외에는 피고 B이 H을 통하여 피고 A에게 224,090,000원을

이체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 B이 주장하는 차용금과 변제금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상이 C 측에 반환된 이상, 피고 B이 H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2억 원은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사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피고 B이 대표이사이기에는 하나 개인적으로 H에게 돈을 입금할 의무는 없고, 달리 위 송금으로 피고 B이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H으로 이체된 2억 원의 중국적인 귀속처는 H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 B에게 중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현금 출금한 5천만 원 및 나머지 7,767,449원

피고 B은 제2송금으로 수령한 1,257,767,449원 중 위와 같이 12억 5,000만 원에 관하여만 피고 B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을 뿐, 나머지 7,767,449원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2021. 2. 25. 출금한 현금 5천만 원에 대한 위 피고의 H 이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달리 이 부분 설명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 측 영역에서 발생한 거래에 관하여 피고 B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반영하여 위 57,767,449원은 피고 B에게 중국적으로 귀속된 금원으로 판단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C이 피고 A에 대하여 2021. 2. 23.자로 송금한 8억 원 및 피고 B에 대하여 같은 일자로 송금한 1,257,767,449원 중 57,767,449원은 아무런 대가 또는 별도의 법률관계 없이 위 각 피고에게 귀속된 돈으로서 C이 위 액수를 각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된다. C의 위 각 증여행위는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각 증여행위에 관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와 C 사이에 2021. 2. 23. 8억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B와 C 사이에 2021. 2. 23. 57,767,449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는 8억 원, 피고 B는 57,767,449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아람

판사이영곤

판사이두현